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 적용대상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추가 》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4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4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법 적용대상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추가 (안 제3조제7호 신설)	3

I.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제221404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형동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0.

다. 회 부 일 : 2025. 11.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일부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안[「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의 법률안 취지에 맞춰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검토의견

가. 법 적용대상에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추가

(안 제3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제3조(적용 대상) ① ----- ----- ----- 1. ~ 6. (현행과 같음) 7. 「 <u>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른 <u>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u> 8. (현행 제7호와 같음)

현행법 제3조제1항¹⁾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²⁾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

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기업도시개발사업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7.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정비·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은 김형동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이라 함)」(의안번호 제14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³⁾’을 추가하려는 것임.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 제6조제1항⁴⁾은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에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적용대상 사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 제3조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됨.

3)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이란 도청이전을 통한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6조(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도청이전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청이전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도청이전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도청이전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5.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6. 도청이전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편, 「도청이전법 전부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 특례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의 혁신도시⁵⁾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혁신도시법」 제5조의2제1항⁶⁾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도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법 제3조제1항⁷⁾의 적용대상에 규정된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될 경우, 현행법상 적용 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이하 각 호 생략)

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정의

- 지자체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이때 건설의 범위는 사업 규모와 무관하며 설치·건축·구축·정비·개량 및 공급·운영사업까지 폭넓게 규정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의 종류 (「스마트도시법」 제2조제3호) >

- ICT 기술을 융합·적용하여 **지능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유무선 **센서망**
-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 **CCTV** 등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을 위한 장치

□ 적용 현황

- (**신도시 건설**) 2기·3기 신도시, 국가시범도시 등 조성 시 정보통신망,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도시안전센터),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스마트폴*·CCTV 등 구축

* 신호등, 가로등 등의 도로시설물에 각종 센서 등을 부착한 지능형 기둥

- 대표사업인 국가시범도시의 경우, 백지상태 부지에 20종 이상의 스마트 기술·서비스를 집약한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 중*

* (세종) 자율차·수요응답형버스·공유차 등 **모빌리티서비스 특화도시** 콘셉트
(부산) 수자원·로봇·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친환경 수변도시** 콘셉트

- (**기존도시 스마트화**) 전국 150여 개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400여 개 구축*

* (예시) 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이동경로를 최적화한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
② **에너지관리플랫폼**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고도화
③ 구도심 전통시장의 화재위험 대응을 위해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 의 처
02)6788-5581